

#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8
----------	-----

제안연월일 : 2023. 10. .  
제안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및 훈련·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관리)에 의거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곰두리 광고)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3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 ○ 추진 필요성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보호작업장 운영 필요
- 양질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안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 운영하고자 함.

##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전반
- 사무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직업 알선
  - 장애인의 보호에 필요한 훈련기회 제공
  -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 사업
  - 평창군 소유의 재산 및 장비(비품)의 사용과 유지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이 정하는 사업
  - 기타 시설운영과 재산관리 제반 운영조건은 위(수)탁 협약서에 정함
- 인력 운영 : 5명(센터장 1, 직원 4명)

##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2(송정리 2290-10)
- 규 모 : 대지면적 1,902m<sup>2</sup>, 건축면적(가·나동) 559.68m<sup>2</sup>
- 현수탁자 :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회장 장만수) \*'19년~현재
- 운영예산('23년 기준) : 297,106천원(군비)

\* 연도별 보조사업, 자체사업(군비) 지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설비기준
  - 최소 설비기준은 부대시설 포함 90m<sup>2</sup> 이상
  - 작업실 및 작업활동 프로그램실 면적은 기계설비 제외 1인당 2m<sup>2</sup> 이상
- 구성기준
  - 근로장애인의 최소 인원은 10명

## ○ 위 치 도



### 마. 민간위탁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5년간)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전문성 및 의지, 재정운영 책임성 등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288백만원 (군비 288)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직업적응능력과 직무기능향상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이 적정함.
-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니즈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향후 종사자 교육, 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예산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 2019. 1. 1. ~ 2023. 12. 31.
  - ※ 위탁운영단체 :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 '23. 11월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3. 11월
-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3. 12. 31. 까지

## 관계법령 발취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